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이강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980 발의연월일: 2024. 12. 26.

발 의 자:이강일·강준현·김용만

민병덕 · 용혜인 · 이상식

이재정 · 조승래 · 한창민

허성무 · 송재봉 의원

(1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05년 제정된 현행법에 따라 설치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 원회는 활동 기간 동안 친일파 168명의 1,300만 제곱미터(2,000억원 상 당)의 토지를 적발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음.

그러나 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후 현재까지 국가가 적발한 친일재산은 전무하고 이를 위한 전담기관도 존재하지 아니하는 바, 친일재산은 시간이 지날수록 제3자 매각 등을 통해 더욱 교묘하게 숨겨지고 있어 적발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음.

이에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를 다시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을 폐지하고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일제의 잔재를 청산하고 정의구현을 도모하고자 함.

법률 제 호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반민족행위자가 그 당시 친일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고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여 거래의 안전을 도모함으로써 정의를 구현하고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우며 일본제국주의에 저항한 3·1운동의 헌법이념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반 민족행위자"라 한다)"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가.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 호·제8호·제9호의 행위를 한 자(제9호에 규정된 참의에는 찬의와 부찬의를 포함한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 나.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결정한 친일반민족행위 자 중 일제로부터 작위(爵位)를 받거나 이를 계승한 자. 다만,

이에 해당하는 자라 하더라도 작위를 거부·반납하거나 후에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 위자재산조사위원회가 결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 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중 제4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자재산조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독립운동 또는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및 그 가족을 살상·처형·학대 또는 체포하거나 이를 지시 또는 명령한 자 등 친일의 정도가 지극히 중대하다고 인정된 자.
-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친일재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국권침탈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 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제국주의에 협력한 대가로 취득하거나 이를 상속받은 재산 또는 친일재산임을 알면서 유증·증여를 받은 재산을 말한다. 이 경우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한다.
- 제3조(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등) ① 친일재산(국제협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외국 대사관이나 군대가 사용·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친일재산 및 친일재산 중 국가가 사용하거나 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재산도 포함한다)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이를 국가의 소유로 한다. 그러나 제3자가 선의로 취득하거나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한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② 친일재산이 매각되어 수익금액이 발생한 경우 국가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 ③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및 환수에 관한 구체적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4조(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설치) 친일재산의 조사 및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친 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제5조(위원회의 업무 등) ①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조사 및 선정
 - 2.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조사 및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
 - 3. 일본인 명의로 남아있는 토지에 대한 조사 및 정리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 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및 사실조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협조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조사 및 선정을 하는 경우 「일제강점하 반 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한 결과를 원용할 수 있다.

-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2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한다.
 -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한 자
 - 2. 공인된 대학에서 역사 관련학과의 전임교수 이상의 직에 10년 이 상 재직한 자
 - 3. 역사고증·사료편찬 등의 연구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자
 - 4. 3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 ③ 위원 중 3인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하고, 2인은 같은 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④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으로 보한다.
 - ⑤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 ⑥ 위원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궐위된 때에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의 의결) 위원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직무를 통할하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 ①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4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그 활동기간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 제10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3. 정당의 당원
 - 4.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 5. 친일반민족행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 6.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직무를 맡는 것이 부적절하다 고 인정되는 자
 - ② 위원이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된다.
- 제11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 ②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

- 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 제12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③ 사무처장은 상임위원 중 1인으로 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회의 소속 직원은 사무처장의 제청으로 위원장이 임명한다.
 -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13조(직원의 신분보장) 위원회 소속 직원은 형의 선고·징계처분 또는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 제14조(자문위원회) ①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독립유공자 및 관련 단체의 대표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국가기관의 공무원,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위촉한다.
 - ③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 이 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비밀준수의무) 다음 각 호의 자는 위원회의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문서·자료 또는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 1.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 2. 자문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 3. 위원회의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 4. 제20조제1항제4호에 따른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 제17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 위원, 자문위원회 위원 또는 위원회 직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제18조(유사명칭사용의 금지) 위원회가 아닌 자는 위원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 제19조(조사의 개시 등) ① 위원회는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의결로써 그 대상재산의 소유관계 및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법원에 보전처분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재산에 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 및 지 방자치단체는 위원회에 친일재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하여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회의 조사 결정 때까지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④ 친일재산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재산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으로 위원회에 친일재산 여부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조사를 개시하여 친일재산 여부의 결정을 한 후 그 결과를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 ⑤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제4항에 따른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 ⑥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대상자나 대상재산을 선정한 때에는 그 선정사실을 해당 조사대상자, 그 배우자와 직계비속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⑦ 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통지를 하는 경우 통지대상자에게 이의 신청의 제기 및 그 절차와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야 한 다.
- ⑧ 제7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조사대상자 및 대상 재산의 선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 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⑨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⑩ 제7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0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친일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재산상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 2. 친일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의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 3. 관련 국가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의 제 출요구
 - 4.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 의뢰
 -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 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상태 등을 규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에서 관련 자료·물건 또는 시설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

손 또는 이와 관련된 자의 진술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라 실지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실지조사의 대상인 기관·시설·단체 등이나 그 직원 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는 조사목적 달성에 필요한최소한의 범위 안에 그쳐야 하며,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받은 기관 등이나 그 직원 또는 친일반민족행위자의 후손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위원 또는 소속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⑥ 제1항제4호에 따라 감정인으로 지정된 자는 허위의 감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⑦ 조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1조(이의신청 등 불복절차) ① 위원회의 실지 조사, 자료제출 요구, 진술청취 등에 있어서 친일재산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그 행위가 있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제19조를 준용한다.
- 제22조(조사대상자의 불출석) 위원회는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 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제23조(결정 등의 통지) ① 위원회는 친일재산이라는 이유로 이를 국가에 귀속시키는 결정을 제7조에 따라 의결한 경우에는 그 대상 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의결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제24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의 파견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지장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에 파견된 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25조(국가귀속재산의 사용) 이 법에 따라 국가에 귀속되는 친일재산 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용도에 우선적

- 으로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26조(포상금의 지급) ① 국가는 친일재산을 적발하여 위원회에 신고 한 사람에게는 그 친일재산을 매각하여 취득 또는 환수한 금액의 1 000분의 1을 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 ② 포상금 지급의 구체적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7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 또는 직원은 형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 제28조(벌칙) 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이나 위원회 소속 직원 또는 위원회의 조사에 참여하는 참고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20조제6항을 위반하여 허위 감정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16조를 위반하여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등을 제공 또는 누설하 거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자
 - 2. 제17조를 위반하여 자격을 사칭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 자
 - 3. 제18조를 위반하여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 제29조(과태료)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1.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상태 및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 2.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석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진술을 하지 아니하는 자
 - 3. 제2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자
- 제30조(과태료 부과권자 및 불복절차) ① 제29조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과·징수한다.
 - 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 ⑤ 제3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 다.

⑥ 위원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폐지)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은 폐지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